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농업기계 구입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인의 정의 변경(안 제2조)

- 현행 :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나.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시행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변경(안 제3조)

- 현행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되는 농업기계가격표에
의한 구입가격 100만원 이상의 농업기계
- 개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되는 농업기계목록집의
용자지원 한도액 100만원 이상인 농업기계

다. 농업기계 구입 지원 제외 대상 및 기간의 명확화(안 제3조)

· 현행 : 타 법령이나 조례, 지침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 개정 : 다른 법령, 조례 또는 지침 등에 따라 농업기계 보조금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농업인

라.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7조 ~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구미시민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되는 농업기계목록집의 용자지원 한도액 100만원 이상인 농업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 조례 또는 지침 등에 따라 농업기계 보조금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농업인
2. 이 조례 또는 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중 해당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
3.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 명의로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4.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고 농업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가격의 100분의 50 이하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인별 보조금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과 농업기계 구입자금 융자금의 총액이 농업기계 구입가격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지원 신청 및 교부결정) ①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접수되면 구미시 농업인 여부 및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농업인의 세대별로 1회,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지원 신청서를 접

수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시기)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농업기계 구입 실적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및 지급중지) 농업기계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시 단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대한 읍면동 사업비 배정, 지원기준 및 사업 대상자 선정의 적정 여부
2.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농업기계 지원 사업에 대한 읍면동 사업비 배정, 지원기준, 사업 대상자 선정의 적정 여부
3. 그 밖에 농업기계 구입·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통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2. 농협 구미시지부 농정지원단장
3. 농업분야 단체 대표
4. 농업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기계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읍면동 단위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읍면동에서는 제7조의 시 단위 위원회에 준하여 읍면동 단위 선정위원회(이하 “읍면동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18조(읍면동 위원회 기능) 읍면동 위원회는 농업기계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종합심사하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 3. 생략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2. 생략

② 생략

□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판매가격”이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농업기계 또는 부품의 실제가격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판매가격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와 별표 1의 부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표시방법) ① 판매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판매가 ○○원, 소매가 ○○원 ”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점포 업체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③ 단, 부품은 별지 서식1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6조(가격정보의 제공)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제4조의 표시의무자에게 부품 판매가격의 정보를 제공받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제1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등의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내 용		산출내역	금액
위원회 참석수당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심의위원회	70천원×5명×2회	700천원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 인당 70,000원(기본)

※2017년 예산편성지침 기준

4. 작성자

- 농정과 친환경농업계 정지원(054-480-5772)

소관 실·과		농 정 과
입 안 자	과 장	이 형 근
	담 당	김 성 호
	담 당 자	정 지 원 (480-5772)